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647
--------	--------	-----

제출년월일 : '97. 11. .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안산시 시세감면조례는 그 적용시한이 '97.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 현행 안산시 시세감면조례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 국가유공자는 “본인명의”를 감면해주던 것은
 - 장애인은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를 감면해주던 것을
-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던 것을
-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 싼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해주던 것을
-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던 것을

□ 앞으로는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 국가유공자는 “본인명의”를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개정 (안 제2조)
- 장애인은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를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개정 (안 제4조)
-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제9조)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안제14조)
-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 삭제 (제17조)
- 짚형 승용차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 삭제 (제18조)
-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경기도 세정 13430-1939('97.10.16)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

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역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

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

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365}$$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안산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서식>

안산시시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사유	안산시시세감면조례 제00조			
안산시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안 산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신 · 구조문 대비표

現 行	改 正 案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 규정하여 ----- 이바지함을 -----.</u></p>
<p>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u>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 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 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 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 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 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u></p>	<p>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 거 주하고 ----- 소 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 면제 한다.</p>

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등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
하는 자가 본인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
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
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후단 신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등급-----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
속 명의로 등록하여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
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
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
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
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
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
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
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
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
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
국상이군경회동이 -----

-----수익사업에

의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

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

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신 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

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측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

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5조의1(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

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7.(생략)

3. 건설교통부 -----

4.~7.(현행과 같음)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학교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생략)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9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삭 제>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
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
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
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사
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
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
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
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
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로 취득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4.(생략)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4.(현행과 같음)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
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
부터 5년간 면제한다.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거나 동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
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 <삭 제>

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
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
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농의소득원개발에 대한 감 제13조(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
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
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
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 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

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

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
 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
 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른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
 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
 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
 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
 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
 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른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
·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
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
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
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13조(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의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 노의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점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삭 제>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삭 제>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
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
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
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
 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
 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
 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
 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
 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
 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
 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
 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
 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

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영업기간(일수)

× 365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
 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
 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과
 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
 널용에-----

 -----.

제16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
 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
 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
 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
 창·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선
 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한다.

<삭 제>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
 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
 제한다.

제17조(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 <삭 제>

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궤형자동
 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
 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000씨씨초과	10원	180원
2,500씨씨이하		
2,500씨씨초과	12원	200원
3,000씨씨이하		
3,000씨씨초과	15원	230원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신 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

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

조개선 및 경영안정을위한특별

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
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
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
준일 현재-----
-----재산세·종합토지

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신 설>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단서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신 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

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
 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
 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
 업소세를 면제한다.

<신 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
 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
 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 기념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감면신청등) (생략)

제26조 (감면신청등)(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생략)

제28조(중복감면이 배제)(현행과 같
음)

제22조(시행규칙) (생략)

제29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안산시시새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47
----------	-----

제출년월일 : 1997. 11. 14.

제출자 : 총무위원장
박공진 외 10인

1. 수정이유

- 현행 안산시시새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부칙 시행일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부칙 제1항중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항중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u>1998년1월1일부터</u> 시행한다.</p> <p>②~③(생략)</p>	<p>부 칙</p> <p>①(시행일).....<u>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u> <u>199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u></p> <p>②~③(원안과 같음)</p>